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5. 16 선고 2023가단102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5. 9.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22. 12. 20. 접수 제19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박인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군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군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구조및면적 철근콘크리트조

84.929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상남도 창원군

대 1361㎡

2.

대 183㎡

3.

대 827㎡

4.

대 141㎡

5.

대 110㎡

대지권의종류 : 1, 2, 3, 4, 5.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5. 2622분의 46.3866

[별지2]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발생 등

가. 기초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D와 아래표와 같이 2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NO	대출일	대여금	이자율	기간	지연배상금	비 고
1	2022년 02월 11일	31,500,000	19.9%	120	20%	공인인증
2	2022년 07월 04일	42,000,000	19.9%	60	20%	공인인증

한편, 피고는 소외 D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수익자입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와 같이 피보전채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소외 D은 위 대출약정에 따라 매월 대여금 상환의 약정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을 아래 표와 같이 연체하였고, 보유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위 약정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여 채권자는 소외 D에게 2023년 02월 02일 기준 중도상환금의 합계금 73,211,862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소외 D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NO	대출일	연체일	채권액	비 고
1	2022년 02월 11일	2022년 12월 01일	31,962,532	
2	2022년 07월 04일	2022년 12월 01일	41,249,330	

2. 소외 D와 피고의 사해행위 등

가. 소외 D의 보유 재산의 처분

소외 D은 유일 재산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외 D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에게 2022년 12월 20일 증여를 원인으로 2022년 12월 20일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 19681 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위 사실들과 소외 D은 자신의 재산을 그 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사해의사가 증명되었고, 피고의 사해의사가 증명되면 수익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

및 일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 명백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소외 D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더욱더 초과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D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들 사이에 체결한 2022년 12월 20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12월 20일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 19681 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